

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(2차)

1. 보고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·세출 변동에 따른 예수금·예탁금 및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 반영
나. 운용규모 : 1,597,196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28,169백만원 증가)

〈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〉

(단위 : 백만원)

＜ 수입계획 ＞			
구 분	1차변경 (A)	2차변경 (B)	증 감 (B - A)
계	1,569,028	1,597,196	28,169
융자금 원리금회수	15,250	15,250	-
예수금	1,332,989	1,350,414	17,425
예탁금 원금회수	13,970	23,970	10,000
예치금회수	144,036	144,741	705
이자수입	62,783	62,822	39

＜ 지출계획 ＞				
구 분		1차변경 (A)	2차변경 (B)	증 감 (B - A)
계		1,569,028	1,597,196	28,169
재무 활동	소 계	1,569,021	1,597,189	28,169 (1.8%)
	예수금 원금상환	160,473	160,473	-
	예수금 이자상환	71,282	71,282	-
	예탁금	1,242,200	1,261,800	19,600 (1.6%)
	예치금	95,066	103,635	8,569 (9.0%)
행정 운영 경비	소 계	7	7	-
	기본경비	7	7	-

○ 수입계획 변경

－ 예수금 : 1,332,989백만원 → 1,350,414백만원 (증 17,425백만원)

▶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·세출 변동사항 반영

• 교통사업(특) 주차장관리계정	236,000	→	241,400백만원(증5,400)
• 주택사업(특) 도시정비계정	416,300	→	320,100백만원(△96,200)
• 주택(특) 재정비촉진계정	227,300	→	231,100백만원(증3,800)
• 도시개발특별회계	359,400	→	432,528백만원(증73,128)
• 수도사업특별회계	0	→	86,190백만원(증86,190)
• 균형발전특별회계	60,800	→	0백만원(△60,800)
•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7,400	→	17,189백만원(증9,789)
•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	1,232	→	1,058백만원(△174)
• 소방특별회계	4,557	→	850백만원(△3,707)

－ 예탁금 원금 회수 : 13,970백만원 → 23,970백만원 (증 10,000백만원)

▶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

－ 예치금회수 : 144,036백만원 → 144,741백만원 (증 705백만원)

▶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 조정

－ 이자수입 : 62,783백만원 → 62,822백만원 (증 39백만원)

▶ 지역교류협력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영

○ 지출계획 변경

－ 예탁금 : 1,242,200백만원 → 1,261,800백만원 (증 19,600백만원)

▶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·세출 변동사항 반영

• 교통사업(특) 교통관리계정	534,500	→	606,000백만원(증71,500)
• 광역교통시설(특)	62,700	→	64,300백만원(증1,600)
• 도시철도건설(특)	400,000	→	398,900백만원(△1,100)
• 주택(특) 국민주택계정	240,000	→	187,600백만원(△52,400)

－ 예치금 : 95,066백만원 → 103,635백만원 (증 8,569백만원)

▶ 수입·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증액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(보고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(보고)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※ 작 성 자 :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김민영(☎ 2133-6813)